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김주영 · 박홍배
손명수 · 강득구 · 남인순
진선미 · 김영환 · 윤후덕
이용우 · 허영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·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.

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·연구기관·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
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· ② (생략) 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·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“산업용 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(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)을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60조(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
대한 과세특례) ① . ② (생
략)

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
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
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
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

1. (생략)

1의2.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
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
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
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
취득하는 부동산(학교등이 취
득한 부동산을 「산업교육진
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이
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
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
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
분의 75를, 과세기준일 현재
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

_____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
대한 과세특례) ① · ② (현행
과 같음)

③ _____

1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0을 각각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감면한다. 2. (생략)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. 2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